서류제출 안내문

혜택은 **올리고!** 위치는 **탐나고!** 부담은 **내리고!**

검단신도시 우미 Lynn 리버포레

- 원활한 서류 접수를 위해 방문 예약제로 운영 되오니, 이 점 양지하시어 예약접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약 일자 및 시간 외 방문이 불가하며,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9에 의거하여 공급계약 체결 전 당첨자에 대한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, 자격 확인과정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명을 완료한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 합니다.

■ 당첨자 자격검증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

구분	당첨자 자격검증(서류접수)	계약 체결
대상	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(예비임차인 제외)	유형별 자격검증 결과 **적격판정**을 받은 당첨자
일정	**04월 28일(금) ~ 05월 02일(화), 5일간** **오전 10:00 ~ 오후 16:00**	**5월 12일(금) ~ 5월 16일(화), 5일간** **오전 10:00 ~ 오후 16:00** ※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문 참조
방문예약 기간	**04월 26일(수) ~ 04월 29일(토), 4일간**	**5월 8일(월) ~ 5월 15일(월), 8일간**
방법	홈페이지(**https://ig6.lynn.co.kr/**) 예약 후, 주택홍보관 방문	
장소	검단신도시 우미'린 리버포레「주택홍보관」(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4-1)	
유의사항	· 당첨자 별 자격 확인 서류는「서류제출 안내문」의 "**신청자격 구비서류**" 또는 **임차인모집공고**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· 모든 증빙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(**23.04.14**) 이후 발급분만 해당됩니다. · 모든 서류는 '상세 표기'로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. (과거 전입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 내역,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등) · 당첨자 자격 확인 시 안내 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· 코로나19 관련 및 지침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, 접수방법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· 코로나19 감염 증상(발열 37.3도 이상, 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, 마스크 미착용하신 분 등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· 방문 예약제는 당첨자 본인 인적 사항을 기준으로「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」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본인을 제외한 대리인(배우자 포함)은 당첨자 인적 사항으로 예약 후 대리인 방문 가능합니다. ※ 당첨자 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아파트임대차계약 위임용) 등 필요 서류 지참 ·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 ·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 [**23.05.12(금) ~ 05.16(화), 5일간**]이 가능합니다.	
문의전화	**032)565-6200** (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)	

■ 예비임차인 자격 확인 안내

- 금회 자격검증(서류제출)은 정당당첨자에 한하여 진행되며, 예비임차인 관련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.

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검단신도시 우미 Lynn 리버포레 | 032) 565-6200

서류제출 안내문

혜택은 **올리고!** 위치는 **탐나고!** 부담은 **내리고!**

검단신도시 우미 Lynn 리버포레

■ 신청자격별 구비서류

구분			서류유형 필수	서류유형 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		○		1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임대차계약용(본인 발급용) **※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**
			○		2.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
			○		3. 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		○		4. 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
			○		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		○	6.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배우자	·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		○	7. 추가 개별통지 서류	본인 및 해당자	·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
특별공급 유형별	청년 셰어형		○		1. 혼인 관계증명서	본인	· 혼인신고일 확인서, "상세"로 발급
			○		2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	○		3.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
				○	4.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	직계존속	·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
				○	5.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	본인	·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
				○	6. 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주택홍보관 비치 /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	신혼부부	혼인 중	○		1. 혼인 관계증명서	본인	· 혼인신고일 확인서, "상세"로 발급
			○		2. 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혼인 예정	○		1. 결혼 확인서류	본인	· 서약서(주택홍보관 비치)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
			○		2.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예비 배우자	·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"상세"발급
			○		3. 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(예비배우자 포함) 세대원	·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
		공통 (해당자)		○	1. 임신증명서류	본인 또는 배우자 (예비배우자 포함)	·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: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-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· 출산이행각서(주택홍보관 비치)
			○		2.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
				○	3. 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· 주택홍보관 비치 /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(배우자 포함)			○		1.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· 용도 :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(본인 발급용)_청약자 기준
			○		2. 위임장	-	· 주택홍보관 비치,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
			○		3. 대리인 신분증, 인장(서명가능)	대리인	·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자격별구비서류)는 임차인모집공고일(2023.04.14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,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 · 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
서류제출 안내문

혜택은 **올리고!** 위치는 **탐나고!** 부담은 **내리고!**

검단신도시 우미 Lynn 리버포레

■ 특별공급(신혼부부/청년)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·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·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해당직장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(금년도 전직자 포함)	·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·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·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·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직장가입자만 해당)	·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/간이/면세사업자	·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· 사업자등록증	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	·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	세무서
	신규사업자	·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· 사업자등록증	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
	법인사업자	· 전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·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세무서
	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·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·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	세무서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행정복지센터
비정규직 근로자		·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(직인날인)	해당직장
일용직 근로자			
무직자		· 비사업자 확인 각서 (주택홍보관 비치) ※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	접수장소

※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 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※ **임차인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0조 제6항 관련)**
-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(의료) 보험증이 없는 경우 :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: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.
-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,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: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